

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조성태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4년 10월 2일

○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2일

3. 제안이유

○ 「독서문화진흥법」 일부개정 및 「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정에 따라 인용하는 정의 조항의 내용으로 변경하고, 독서 문화 진흥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과 협력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○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관련 조례에 맞게 정비(안 제2조)

○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 정비(안 제4조)

○ 독서 문화 진흥 사업 운영 근거 마련(안 제6조)

○ 독서 문화 진흥 사업 협력 조항 정비(안 제7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31일 일부개정, 2024년 5월 1일 시행된 「독서문화진흥법」 및 「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에 맞춰 인용하는 정의 조항을 변경하고, 독서 문화 진흥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 내용은 “지역서점“에 대한 정의를 「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에 규정된 용어 정의에 맞춰 정비하고(안 제2조), 「독서문화진흥법」 개정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(안 제4조), 독서 문화 진흥 사업 수행 시 참가자에게 상품권,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(안 제6조),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 조항을 신설(안 제7조)하고자 하는 것임.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, 특별한 이견이 없음.